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8월 31일

나. 발 의 자 : 박정자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9.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정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 시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와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철거되는 주차장 면수의 2분의 1이상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 및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4)

○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개정(안 제5조)

- 6미터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확보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 신설(안 제21조의4)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제)

○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확보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1조의2는 자지법규 입안 순서에 따라 목적규정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에 따라, 현 조례 제1조의2는 제1조3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현 조례 제4장 제21조의2 부설주차장 관련 용어 정의도 안 제1조의2로 이동하고 제21조의2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 안 제4조의4에서는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 조례 제4장 제20조의2 여성우선 주차구획과 제20조의3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규정을 제1장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을 신설하여 각각 이동하고 별지 서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현 조례 제20조의2와 제20조의3은 삭제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 노상주차장 설치 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였고
- 안 제21조의4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총합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장치의 철거 시 확보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
----------	----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일

발의자 : 박정자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확보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4)
- 나.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개정(안 제5조)
 - 6미터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확보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 신설(안 제21조의4)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8. 8. 24 ~ 8. 30.):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1.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3.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

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4.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1조의3(중전의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

④ 이 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중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제1장제4조의5 및 제4조의6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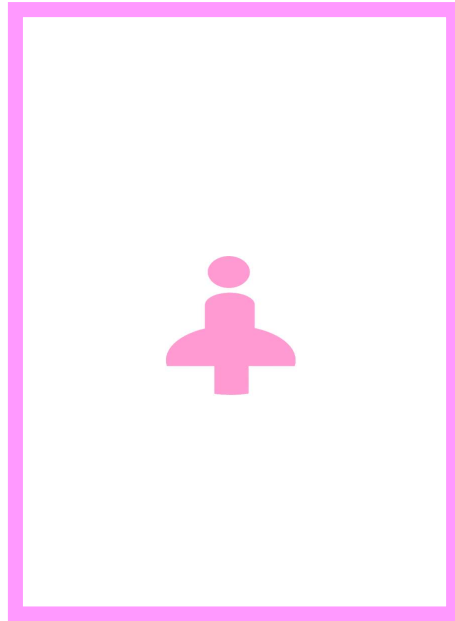
전용주차장 표지판(제5조의2제3항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P</td> </tr> </table>	○ 전	○ 용	P	300mm
○ 전	○ 용	P		
<p>주차장 이용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400mm			
600mm	800mm			

- 재료 : 알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탕 : 청색
 - 문자 : 흰색, 고딕체
 - 문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란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여성우선 주차구획(제4조의5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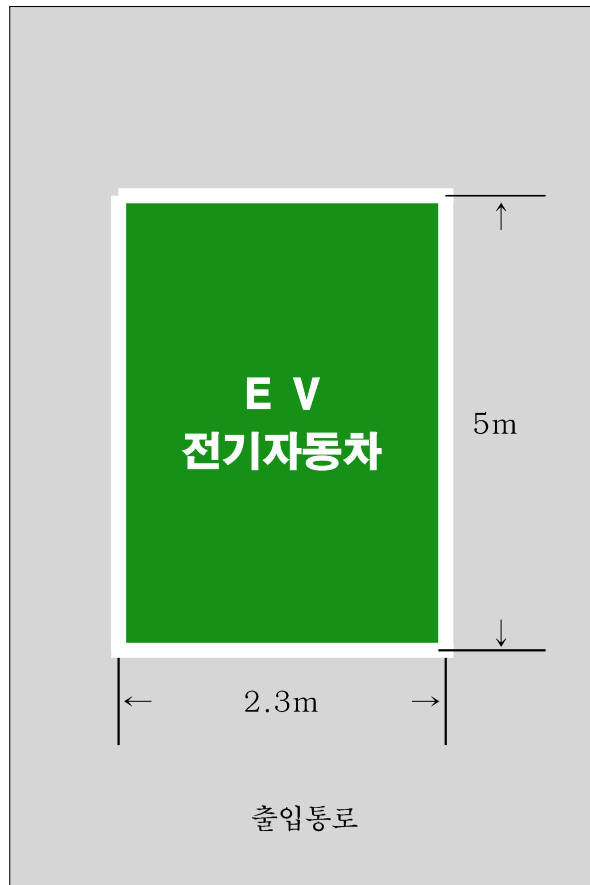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 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4조의6제3항 관련)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사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p> <p>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p> <p>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p> <p>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p>

(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
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
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
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
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
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
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
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
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
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
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
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법 제 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1.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3.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4.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이

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구역으로서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 1 항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 또는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

④ 이 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

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영 제7조제2항 -----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
다.

제20조의2 · 제20조의3 (생략)

제2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이
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
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
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
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
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
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
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하
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이
란 영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
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

-.

제4조의5 · 제4조의6 (현행 제20
조의2 및 제20조의3과 같음)

<삭제>

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신 설>

제21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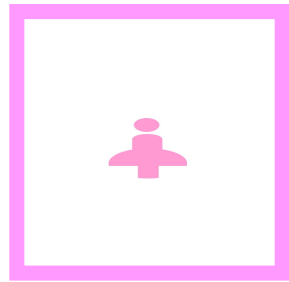
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 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현행안	개정안																		
<p>[별지 제4호서식] 전용주차장 표지판(제5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208 381 1115 1002"> <tr> <td data-bbox="235 416 589 520">○ 전</td> <td data-bbox="589 416 947 520">○ 용 P</td> <td data-bbox="947 381 1115 555">300mm</td> </tr> <tr> <td colspan="2" data-bbox="235 555 947 922"> <p>주차장 이용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td> <td data-bbox="947 555 1115 922">400mm</td> </tr> <tr> <td colspan="2" data-bbox="235 922 947 1002">600mm</td> <td data-bbox="947 922 1115 1002">800mm</td> </tr> </table> <p>(단위 : 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 알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탕 : 청색 ○ 문자 : 흰색, 고딕체 ○ 문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란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 전	○ 용 P	300mm	<p>주차장 이용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400mm	600mm		800mm	<p>[별지 제4호서식] 전용주차장 표지판(제5조의2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182 381 2089 1002"> <tr> <td data-bbox="1209 416 1563 520">○ 전</td> <td data-bbox="1563 416 1921 520">○ 용 P</td> <td data-bbox="1921 381 2089 555">300mm</td> </tr> <tr> <td colspan="2" data-bbox="1209 555 1921 922"> <p>주차장 이용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td> <td data-bbox="1921 555 2089 922">400mm</td> </tr> <tr> <td colspan="2" data-bbox="1209 922 1921 1002">600mm</td> <td data-bbox="1921 922 2089 1002">800mm</td> </tr> </table> <p>(단위 : 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 알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탕 : 청색 ○ 문자 : 흰색, 고딕체 ○ 문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란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 전	○ 용 P	300mm	<p>주차장 이용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400mm	600mm		800mm
○ 전	○ 용 P	300mm																	
<p>주차장 이용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400mm																	
600mm		800mm																	
○ 전	○ 용 P	300mm																	
<p>주차장 이용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400mm																	
600mm		800mm																	

현행안

[별지 제9호서식]

여성우선 주차구획(제20조의2제3항 관련)



출입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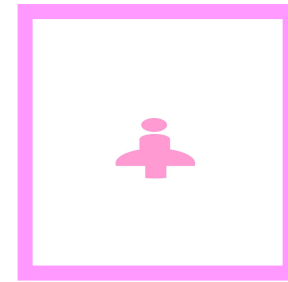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 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

개정안

[별지 제9호서식]

여성우선 주차구획(제4조의5제3항 관련)



출입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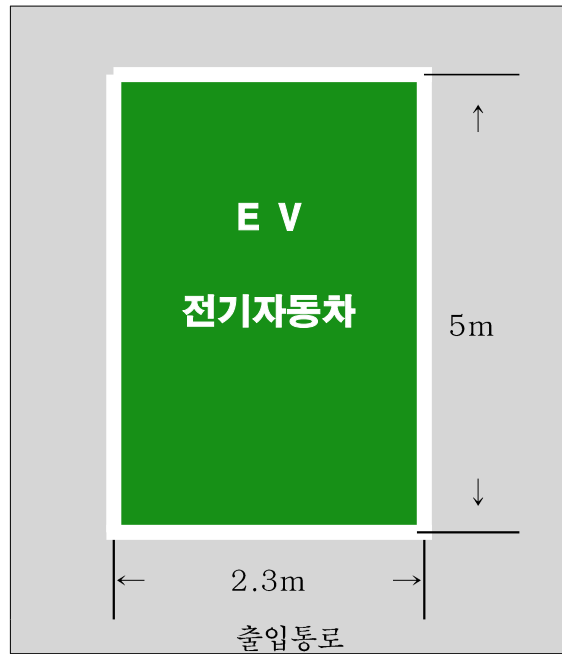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 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

현행안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0조의3제3항 관련)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사용

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4조의6제3항 관련)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사용